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기업경영과 세무

- 국세청 · 2019. 6

##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 1 2020년 국세행정운영방안

####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
-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
-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진수분석, 철저한 부채상환 사후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의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대기업 사주일가,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서도 엄단
-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

###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을 위한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축소하여 나가겠습니다.

###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제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내용 확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한 신고수준 향상과 신고 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사전지원'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 불성실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여 실시하되

-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추진

### 조사기간 최소화

조사유형별로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운영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회계 및 세무분야 등에 대한 지도·상담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 구체적 탈루 혐의 시 조사 실시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사

## II 기업경영과 세무

### 1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 국제거래 6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절세를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5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기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 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6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7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⑧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⑨ 위의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이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정)

###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는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정)

##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1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30의6)
-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②)
-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

- 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9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



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5. 2. 23. 부터 전자불복청구제도 시행

## 10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부실과세를 유발하는 잘못된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t)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관련 누리집] ⇨ [국세법령정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2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분	내용	수도권		수도권 이외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조특법 § 6)	5년간 50~100% 세액감면	50%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50% ~ 100%*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 7)	매년 5~30% 세액 감면 (최대 1억원 한도)	소기업	- 의료, 도·소매업 10% - 상시 업종의 20%	- 의료, 도·소매업 10% - 상시 업종의 30%
		중기업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의료, 도·소매업 5% - 상시 업종의 15%
각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 130)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공제 허용	

-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해당 포함)·북평·강진·정읍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기업 등 포함)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 § 64).
-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 § 12의2, § 121의8, 121의17, 121의20~22).
-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1.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 § 104의24)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 감면 및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li> <li>-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li> <li>-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li>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li> <li>-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li> <li>-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li> <li>-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2(0.1%), 10% 한도)</li> <li>-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보전액의 15%)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li> <li>-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0)</li> </ul>
기타 조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li> <li>- 접대비 한도액 우대</li> <li>-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li> <li>-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li>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자에 대한 감면허용</li> <li>-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li> <li>-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li> </ul>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혜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계	주요 내용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대 세액공제</li> <li>-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li> <li>-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 ← 종전 50~75%(1년)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 75%, 그 외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li> <li>- 3년간 70%(청년 5년간 90%)</li> </ul>

재고용	▶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소득공제 -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분×15%
임금증대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 1천만원(중견 7백만원)

### 시설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투자금액의 3%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2%(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기타 조세지원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직장보육시설은 10%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 R&D에 따른 세제혜택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0%(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li> </ul> </li> <li>-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분방식:당해연도 지출액 × 0~2%(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li> <li>• 증가분방식:(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li> </ul> </li> <li>-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비:연구시험용 자산 등</li> <li>• 공제액: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li> </ul> </li> </ul>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li> </ul>

M&A와 세금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li> <li>•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li> </ul> </li> <li>-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li> <li>•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li> <li>•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li> <li>*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li> </ul> </li> </ul>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li> <li>-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li> <li>-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li> <li>-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li> <li>- 합병에 따른 중복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li> </ul>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 13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도 개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18.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법인

-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 \times 65\% - (투자금액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 \times 15\%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 45의9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개인의 경우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하였으며,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다음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법인
    -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 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



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신고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15 해외 직접투자자 세금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그 고유번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	제출의무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직접투자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자 ㉠ 지분을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을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손실거래 명세서	위 ㉠-㉡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 / 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 / 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
  - (개인) 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300만원 → 건별 500만원
  - (법인) 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500만원 → 건별 1,000만원
  - (대상 확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신설
    -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금액) 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16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 또는 투자운용(임대 포함)한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할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sup>\*1)</sup>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주식<sup>\*2)</sup>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sup>\*3)</sup>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 17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
  -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증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18년 보유분('19년 신고분)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 신고방법 : 6월중(6.1~6.30)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신고내용
  -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회사명·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용]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20억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초과 50억이하	2억원 + 20억 초과금액 × 15%
50억초과	6억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3%이상, 20%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그 거주자는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 및 관련 세금 신고여부를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소명시 과태료(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 보고서 종류 · 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



## 1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비율이 30%(중견 40%·중소법인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소·중견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 5%(20%, 50%)) × (주식보유비율 - 5%(10%))

###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19.12월말 법인의 경우 '20.6.30.)

## 20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4)

\* '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19년12월 말 결산

법인 주주의 경우 '20.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 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 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